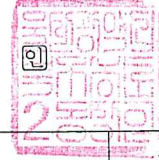


직권조치 통지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0 년 1 월 31 일

농소2동장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장*호	1963.09.07.	울산광역시 북구 신기3길 19-10,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3길 19-1	직권조치사항: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한 도로명주소 정정 직권조치 일자: 2020년 1월 13일
이*운	1981.01.06.		
이*억	1974.04.18.		
백*현	1984.11.10.		